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례연구*

: 인천시 남동구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performance analysis of social enterprises
in Nam-dong Gu, Incheon

최 홍 근** · 유 연 우***

Choi, Hong-Geun · You, Yen-Yoo

■ 목 차 ■

- I. 서 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모형 설계
- IV. 실증분석 결과
- V. 결 론

본 연구는 인천시 남동구의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기존 사회적 기업의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수익성 분석이 가능한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적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익성 분석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경제적 성과지표(매출액 및 이익구조, 성장성과 수익성), 사회경제적 성과(SROI : Social Return on Investment), 그리고 이를 총합한 수익률(BROI : Blended ROI)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성과의 경우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측면에 비교적 양호한 기업이라도 정부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나, 또는 성장성·수익성·안정성 측면모두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 향후 채무상환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어려움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 남동구 소재 사회적 기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박사과정(주저자)

***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교수(교신저자)

논문 접수일: 2013. 2. 19, 심사기간(1차): 2013. 2. 20 ~ 2013. 3. 18, 게재확정일: 2013. 3. 18

업의 사회적 수익률(SROI)은 52.0%로 사회적기업의 전국 평균 사회적 수익률(SROI)인 48.9%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주제어: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SROI, BROI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ways to expand social enterprises to create jobs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in Nam-dong Gu, Incheon. For this purpose, I carried out a profitability analysis targeted 16 social enterprises. Social enterprises have both business-characteristics for profit and social-characteristics for publicity. In consideration of them, this study conducted a profitability analysis using economic performance indicator like sales or business profits, Social Return on Investment(SROI), and Blended ROI(BROI) analysis method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results of economic performance analysis show that some social enterprises have a poor economic performance or are concerned about debt payments. Also others have a high dependence on government grants even if they have favorable economic performance like growth rate, profitability, and stability. In the results of Social Return on Investment analysis, SROI of Social enterprises in Nam-dong Gu is 52.0%. It is higher than average SROI of social enterprises all over the country, 48.9%, suggested in a previous study.

□ Keywords: Social Enterprises, Social Return on Investment(SROI), Blended ROI(BROI)

I. 서론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은 국가마다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업의 이윤 창출보다는 사회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 표출된 실업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활용된 공공근로사업과 자활사업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2003년 참여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논의가 양극화 해소의 주요 수단으로서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되어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점진적으로 사회적기업 형태로 전환하기로 하고 2007년 1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동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정책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이 수반되어 왔다. 즉, 2008년까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계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와 경기도에 불과했으나,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2009년 이후에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전체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다수가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동구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기존의 사회적기업에 더하여 새로이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2년 상반기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7대 분야 28개 모델을 사전적으로 개발하고, 이의 수익성 확보여부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남동구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성과 및 사회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전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방법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 적합한 모델을 제안한다.

둘째, 제안된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모델을 남동구에 적용하고, 그 사례분석 방법론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사회적기업의 의의

1)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등장배경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의미한다.¹⁾ 여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기서 사회적 목적이란 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②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③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천을 위한 재투자 등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은 ① 비영리법인·단체·조합·상법상 회사 등 다양한 조직형태 하에서, ②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인건비)의 30% 이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일자리 제공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둘째,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셋째, 혼합형은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을 혼합한 유형이다. 넷째, 지역사회 공헌형은 2011년에 신설된 유형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형이다. 다섯째, 기타형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지칭한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유럽의 경우 1970년대 후반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른 복지제도 개혁에 착수, 공공부문의 민영화 과정에서 제3섹터가 부각되면서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출현하게 되었다(고용노동부, 2012). 이후 1980년대 중반 높은 실업률 및 소외계층 증가 등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80년 레이거노믹스 등장과 함께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감축함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재정자립도 향상 요구가 증대되면서 비영리공익활동의 지속을 위한 수익사업이 일반화되었음. 이러한 과정에서 ASHOKA 재단 설립자인 빌드레이튼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일반화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문제와 심화된 양극화 문제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하게 되었으며,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전통 가족구조의 해체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고용확대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기존 처럼 단순 이벤트성의 기부나 후원이 아니라 이익의 사회환원, 나눔경영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2003년 참여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논의가 양극화 해소의 주요수단으로서 인식되어,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점진적으로 사회적기업 형태로 전환시키기로 하고 2007년 1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표 1>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도입과정

| 시기 | 주요 내용 |
|-----------|-------------------------------------|
| 1990년대 초반 |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공동체 운동,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등 |
| 1990년대 이후 |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사업 |
| 1996년 | 복지부의 자활사업 |
| 1997년 | 외환위기, 공공근로 시작 |
| 2000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자/차상위자) 자활지원 사업의 제도화 |
| 2003년 | 사회적일자리 사업 - 저소득소외계층 사회서비스 - 실업·양극화 |
| 2007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차 36개 인증 |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2) 사회적기업의 법적근거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법 제1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5조의2에서는 “광역시·도 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시설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 정책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여섯째,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일곱째,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월까지 21차례의 인증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64개소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에서 687개소가 인증을 받아 50.3%의 인증율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중 31개소가 인증 취소 및 반납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사회적기업의 특성

2001년 설립된 유럽 15개국 '사회적기업 연구자 네트워크'에 제시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경제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2). 첫째, 경제적 기준면에서 사회적기업의 특성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지만 상당수준의 경제적 위험도를 갖고 있고, 최소한의 유급직원을 필요로 한다. 둘째, 사회적 기준면에서 사회적기업의 특성은 지역 사회의 이익 추구를 위한 목표를 명시하고 시민 주도형이며 자본의 소유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의사결정(1인 1투표권)구조를 가지고 참여적 특성과 이익분배에 제한을 둔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그 법률이나 제도, 정책, 주요 활동내용면에서 서로 저마다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국가별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대한 내용은 <표 2>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2> 국가별 사회적기업의 특성

| 국가 | 주요 법률·제도 및 정책특성 | 주요 활동 내용 |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 부속 계약(2005년) 조직간 통합 장려, 집적구조 간소화, 다양한 조직의 사회적기업 전환 유도 서비스바우처 등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적 장치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한 사회적·직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용계약과 함께 직업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사회단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동시장통합 촉진 |
| 이탈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1년 유럽에서 최초로 사회적기업 법제화 사회적기업 전문지원기관 등 유기적 지원시스템 가동 세제혜택 등 사회적기업 지원 통합기업지원시스템 사회적기업 부문 관련기관 형성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구로서 컨소시엄 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 부문의 조직적 유연성을 확보하여 생산자, 이용자, 자원봉사자, 지역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함 컨소시엄 모델을 활용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

| 국가 | 주요 법률·제도 및 정책특성 | 주요 활동 내용 |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청(SEU)(2001년)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직체계(제3섹터형)와 육성전략에 따른 체계적 육성 ▪ 지역공동체 이익회사(CIC)법을 제정하여 간소한 사회적기업 설립운영모델 창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U는 사회적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을 위한 초점이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고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음 |
| 포르투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사회복지제도와 IPSS(사회적 연대책임 민간단체)간의 공조 협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소외 가정, 소외 지역사회 등 특정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데 그 목표를 둠 |
| 벨기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센터(지역 인큐베이션 센터)(2000년) ▪ 사회적기업이 범위가 사회적 목적기업과 자활지원기업(노동통합기업)을 포괄 ▪ 서비스바우처 등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적 장치 설치 ▪ 재정적 혜택의 폭과 취약계층 고용률이 연동된 노동통합기업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 내의 예비 기업가들이 사업 아이디어의 틀을 완성하고 이행하도록 도와주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도록 장려함 ▪ 창업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플랜더스 당국은 사회적기업 부문이 자체적으로 개발 발전하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 |
| 핀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지원정책기구(NSSSE)설립(2004년) ▪ 대국민고용서비스법과 실업구제법에 의거 사회적기업에 보조금 지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및 예비 사회적기업들의 네트워크를 구축 및 지도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 |
| 헝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의 사회적기업 총괄기구가 공적자금 지원으로 '민간고용워크숍(CFM)' 프로그램을 실시(2003년) ▪ 약 300개에 달하는 NOP 회원들과 함께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프로그램, 재무계획서, 보조금 신청서 등의 준비와 관련한 전문가 시스템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부문에서 시민들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의사소통의 폭을 넓히고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성공적인 협력 모델 |
| 폴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협동조합법, 2006년 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배제로 인해 위협받는 사람들의 활성화와 포용에 초점 ▪ 소득세를 경감해주고, 수입은 조합원의 사회적·직업적 재통합에 투입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기업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조직으로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는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적 가치나 생태적 가치 등은 가격기구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요만큼 창출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시장의 한계에 도전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시장기구와 기업조직의 운영 원리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가 교환되지 못하는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려는 조직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고유한 특성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표 3> 사회적기업의 일반적 특성

| 구분 | 내용 |
|----------|--|
| 경제적 활동 | 경제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생산, 판매조직 |
| 사회적 목적 | 영리 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해결 또는 시장실패의 극복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기업의 목적 |
| 기업형 운영원리 | 기업가정신, 시장원리, 전략적 사고, 목표관리 등 영리기업의 경영도구 및 조직의 운영원리를 활용 |
| 경제적 자립 | 정부보조금 및 기부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익사업의 규모를 키우면서 경제적 자립을 추구 |
| 사회적 소유구조 | 종업원, 고객, 지역사회,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소유구조(governance)를 형성하며, 이때 신용조합, 협동조합, 공동체, 관민합작, 공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 |

사회적기업이 갖는 이러한 특성은 영리기업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영리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되, 이윤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약이 발생한다. 반면에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두되, 생산 및 판매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게 된다.

사회적기업이 갖는 이러한 특성으로 수익성의 개념과 범주에서도 다르게 규정된다. 영리기업의 수익성은 투입비용과 매출수입 등 경제적 이윤의 개념인 반면에,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최종 결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까지 포괄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할 때는 경제적 이윤과 사회적 가치, 그리고 이것이 총합된 가치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각각의 역할과 의미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경제적 이윤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생태환경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담보하는 도구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 이윤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은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표 4> 영리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

| 기업유형 | 목적(objective) | 수익성(profitability) | 제약조건(constraints) |
|-------|---------------|-----------------------|-------------------|
| 영리기업 | 이윤창출 | 경제적 이윤 | 사회적 책임 |
| 사회적기업 | 사회적 문제의 해결 | 경제적 이윤 + 사회적 가치 | 경제적 자립 |

3.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표개발과, 각 지표·성과간의 영향관계 검증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승규·라준영(2010)의 연구에서는 기존 SORI기법은 투자의 개념이 일반 회계 원리에서 벗어나 있으며 사회적 회수의 개념도 경제적 회수 개념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사회적 가치 측정의 본질을 ‘외부성’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은 내부적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여 외부에 보고할 수 있는 사회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용탁(2010)의 연구에서는 BSC모형을 적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과기준에 대한 적용방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기업의 BSC관점별 측정지표로 사회적 목표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재무적 관점에서는 재정의 안정성, 이해관계자의 재정지원, 영업이익, 주력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등을 측정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장성희·반성식(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기업가 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기업가 지향성이 시장 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지향성의 경우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대욱 외(2011)의 연구에서는 지역별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적 성과(EROI), 고용창출과 관련된 사회적 성과(SROI), 총합된 성과(BROI) 등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에서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높았고, 인구저밀지역에서는 취약계층 고용효과가 높지 않아

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성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효과와 비즈니스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육성전략의 두 방향성을 중심으로 16개 시도에 대한 육성전략의 지향점과 현 육성계획상의 장단점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조순·강병준(2012)의 연구에서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성과가 경제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직형태가 이들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성과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두 성과간의 영향관계의 경우 사회적 성과가 경제적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란·홍정화·차진화(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요인(역량, 사회적 기업 교육이수, 지배구조, 회계시스템 등)이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최고경영자의 역량, 종업원의 역량, 회계시스템 운영이 좋을수록, 경제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성과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역량, 종업원의 역량, 사회적기업가 교육이수, 회계시스템의 운영이 좋을수록, 민주적 지배구조일수록, 사회적 기업 인증시 그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분석은 이승규·라준영(2010), 이용탁(2010), 장성희·반성식(2010), 장영란·홍정화·차진화(2012) 등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주로 성과 지표개발, 또는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검증, 잠재요인 개발 등과 같은 초기단계의 연구에 머물러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한 연구는 전대욱 외(2011), 최조순·강병준(2012) 등의 연구로 뽑을 수 있으나, 이들 연구 또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거나, 실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의 성과들 간의 관계성을 검증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기존 성과 분석법을 활용하여 미시적인 관점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사회적 기업들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들의 성과의 단순 영향요인만이 아닌, 실제 성과지표들을 적용하여 성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성과 지표의 활용성과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모형 설계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남동구의 사회적기업 중 고용 및 취업과 관련된 자료수집이 가능한 16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성과 및 사회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내재된 수익성의 특성을 반영, 경제적 수익성과 사회적 수익성, 그리고 이를 합산한 총합된 수익성을 통해 남동구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관련 통계의 집계 가능한 남동구 소재 사회적 기업은 사회경제적 총합수익성까지 분석하되, 통계가 제한된 타지역 유사 사회적기업이나 전국 단위의 동일 업종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익성 위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남동구의 16개 사회적 기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의 A1과 A13의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분야의 A2의 경우 의료폐기물 용기제조, A14의 경우 장애인교육·도자기 제조사업을, A15는 장애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분야는 A3, A4, A5가 속해있으며, 기타분야에서는 물류택배 사업을 진행하는 A6, 제조업은 A7, A8, A16, A12가 있고, 농작물생산 사업은 A11, 상품중개사업은 A9, 경호사업은 A10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석방법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적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성과를 평가할 때도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사회적 가치는 사회서비스 유형별로 서로 상이하야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정량화가 가능한 경제적 가치와 정량화가 곤란한 사회적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평가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으로서 소유주 및 경영자의 열정, 자원 및 구조상의 요건이 부족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기존의 정형화된 성과측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Garengo et al. 2005). 초기에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체계의 구축(이규용 외 2006, 김순양 2008)이나 비시장제인 사회적 가치의 측정을 위한 조건부 가치법 등이 활용되었다(정영호 외 2008).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업종, 조직, 목적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입체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경제적 성과(매출액 및 이익구조, 성장성과 수익성)의 경우 객선화

(2011)의 실태조사를, 사회경제적 성과(SROI : Social Return on Investment), 그리고 이를 총합한 수익률(BROI : Blended ROI)의 경우 최인수 외(2011)의 분석모형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1) 경제적 성과의 분석모형

경영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재무제표상의 각종 수치를 활용할 수 있으나, 사회적기업의 경우 결산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높아 경영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이거나 전수조사에서 집계된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3개 분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일반기업과 다른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익성 분야에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 의존도를 추가하였다.

<표 5> 분석대상 경영지표 및 측정방법

| 분 야 | 경영지표 | 측정방법 |
|-----|-----------|---------------------------|
| 성장성 | 총자산 증가율 | (당기말 총자산/전기말 총자산)×100-100 |
|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말 매출액/전기말 매출액)×100-100 |
| 수익성 | 총자본 이익율 | (당기 순이익/당기 총자산)×100 |
| | 매출액 순이익율 | (당기 순이익/당기 매출액)×100 |
| | 매출액 영업이익율 | (당기 영업이익/당기 매출액)×100 |
| 안정성 | 부채비율 | (당기 부채총계/당기 자기자본)×100 |
| | 정부지원금 의존도 | (당기 정부지원금/당기 매출액)×100 |

2) 사회적 성과의 분석방법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 Social Return on Investment)은 사회적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미국의 민간재단 로버츠 지역개발기금(REDF)과 Jed Emerson이 2000년 개발하였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기부가 산출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Emerson et al., 2000). 이는 기존의 영리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나타내는 투자수익률(ROI : Return on Investment)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화폐가치로 환산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총합된 가치(BROI)는 경제적 회수와 사회적 회수의 합계치를 투자액으로 나누어 측정하며, 이 경우 사회적 회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화폐가치액의 환산 절차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제공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주로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정형화된 항목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첫째,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복지예산 절감분을 들 수 있다. 취약계층 고용만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국고보조금 절감을 가정하며, 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1인당 수급액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취약계층의 수급절감액을 추정하였다. 둘째, 취약계층 및 일반근로자의 가계소득과 조세수입 증가분을 들 수 있음. 이 경우 사회적기업의 임금수준과 최저임금의 차이로 측정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가정과 논리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수익률(SROI) 측정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수익률(SROI) 산정모형>

$$\begin{aligned} \text{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수익률} &= \frac{\text{사회적 편익}}{\text{사회적 비용}} \\ &= \frac{(\text{공공부문 복지예산 절감액}) + (\text{취약계층 및 일반근로자 소득증대와 세수증가액})}{\text{정부 및 자치단체 인건비 지원액}} \end{aligned}$$

여기서,

- 공공부문 복지예산 절감액 = (남동구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평균지급액) ×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근로자 수)
- 취약계층 소득증대와 세수증가액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 - 법정 최저 임금)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 수)
- 일반근로자 소득증대와 세수증가액 = (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임금수준 - 법정 최저임금) × (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수)

3) 통합된 사회경제적 성과의 분석방법

사회적기업의 통합된 사회경제적 수익률 BROI는 경제적 수익률 EROI와 사회적 수익률 SROI의 합계로 산정한다. 즉, 경제적 회수와 사회적 회수의 합계를 경제적 투자와 사회적 투자의 합계치로 나누어 산출한다. 경제적 수익률은 순이익과 총자산을 활용한다. 다만, 전술한바와 같이 사회적 회수 및 투자는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투자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본 모델에서는 사회적 투자는 계상하지 않는다.

〈총합된 사회경제적 수익율(BROI) 산정모형〉

$$\begin{aligned} \text{사회적기업의 사회적 투자수익율} &= \frac{\text{사회경제적 회수}}{\text{사회경제적 투자}} \\ &= \frac{(\text{경제적 회수}) + (\text{사회적 회수})}{(\text{경제적 투자}) + (\text{사회적 투자})} \end{aligned}$$

여기서,

경제적 회수 = 순이익 = 매출액 - 제비용

사회적 회수 = 사회적 편익 - 사회적 비용

= (복지예산 절감액 + 취약계층 소득증대액 + 일반근로자 소득증대액)
- (정부 및 자치단체 지원금)

사회경제적 투자 = 총자산

IV. 실증분석 결과

1. 경제적 성과분석

1)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노동시장으로 통합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책무인 바,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 및 취업과 관련된 조사자료를 제출한 16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 고용인원은 235명으로 집계되었다. A1이 63명, A13 28명 등 사회복지 분야 사회적기업이 91명으로 3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59.1%이며, 사회적기업의 전국 평균치 58.0%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서로 다른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치 45.3%를 크게 뛰어넘는 69.6%를 시현하였다. 사회복지 분야도 전국 평균치 47.6%에 비하여 다소 높은 성과를 창출하였다. 반면에 청소 분야는 전국 평균치 67.3%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으며, A3은 45.5%에 그쳐 취약계층 고용의 성과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유통업 등으로 구성된 기타 분야도 대체로 전국 평균에 비하여 취약계층 고용은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표 6> 목적 실현별 취약계층 고용비율 현황

|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 남동구 | | | 전국평균 ('09) |
|-----------|-------|------|---------|---------|------------|
| | | 고용인원 | 취약계층 고용 | 취약계층 비율 | |
| 일자리 제공형 | 소계 | 162 | 97 | 59.9 | 73.2 |
| | A1 | 63 | 33 | 52.4 | |
| | A2 | 8 | 5 | 62.5 | |
| | A3 | 11 | 5 | 45.5 | |
| | A4 | 14 | 9 | 64.3 | |
| | A5 | 10 | 8 | 80.0 | |
| | A6 | 6 | 4 | 66.7 | |
| | A7 | 9 | 7 | 77.8 | |
| | A8 | 13 | 9 | 69.2 | |
| | A9 | 18 | 8 | 49.4 | |
| | A10 | 10 | 9 | 90.0 |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소계 | 8 | 5 | 62.5 | 37.3 |
| | A11 | 6 | 3 | 50.0 | |
| | A12 | 2 | 2 | 100.0 | |
| 혼합형 | 소계 | 65 | 37 | 56.9 | 54.1 |
| | A13 | 28 | 14 | 50.0 | |
| | A14 | 15 | 11 | 73.3 | |
| | A15 | 18 | 10 | 55.6 | |
| | A16 | 4 | 2 | 50.0 | |
| 합계 | | 235 | 139 | 59.1 | 58.0 |

주: 취약계층 고용비율의 전국 평균치는 광선화(2011)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목적 실현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성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서비스 제공형 2개 기업은 전국 평균치 37.3%를 크게 상회하는 62.5%를 시현하였다. 그리고 혼합형 4개 기업은 전국 평균치 54.1% 보다 다소 높은 56.9%를 시현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2개 기업은 각각 50%에 그쳐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자리 제공형은 평균적으로 전국 평균치 73.2%에 미달하였으며 10개 기업 중에서 3개 기업만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고용유발효과

본 연구에서는 고용유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취업계수를 비교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취업계수는 산출액 10억원에 의해 유발되는 취업자 수로 나타낸다. 2009년 기준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 나라 기업의 취업계수는 28.8인데, 사회적기업의 취업계수는 47.4에 달하여 10억원 매출 시 유발되는 고용효과는 사회적기업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동구 소재 사회적기업의 취업계수는 28.5이며, 10억원 매출 시 28.5명의 고용이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업계수를 보면 남동구의 사회적기업은 전국 전체 사회적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그만큼 고용유발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업종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 2개 기업이 전국 평균 75.7를 크게 넘어서고 있어 사회복지 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사회적기업 취업계수 현황

| 업종 | 사회적기업 | 매출액(천원) (‘11년) | 고용(명) (‘12.9) | 사회적기업 취업계수 | | 일반기업 취업계수 (‘09년) |
|----------|-------|-------------------|------------------|---------------|--------------|------------------------|
| | | | | 남동구 | 전국 (‘09년) | |
| 사회 복지 | A1 | 666,261 | 63 | 94.6 | 75.7 | 28.8 |
| | A13 | 219,929 | 28 | 127.3 | | |
| 교육 | A2 | 541,073 | 8 | 14.8 | 107.1 | |
| | A14 | 52,903 | 15 | 28.4 | | |
| | A15 | 396,599 | 18 | 45.4 | | |
| 청소 | A3 | 200,869 | 11 | 54.8 | 38.4 | |
| | A4 | 60,314 | 14 | 23.2 | | |
| | A5 | 65,842 | 10 | 15.2 | | |
| 기타 | A6 | 20,160 | 6 | 29.8 | 33.9 | |
| | A7 | 57,335 | 9 | 15.7 | | |
| | A8 | 2,038 | 13 | 63.8 | | |
| | A11 | 3,473 | 6 | 17.3 | | |
| | A16 | 49,516 | 4 | 8.1 | | |
| | A12 | 4,335 | 2 | 4.6 | | |
| | A9 | 4,939,045 | 18 | 3.6 | | |
| 합 계 | | 7,346,516 | 235 | 20.8 | 47.4 | |

주: 사회적기업 취업계수는 광선화(2011), 일반기업 취업계수는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하였다.

3) 매출액 및 이익구조

재정구조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지난 3년간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① 매출수입과 이익규모, ② 매출수입과 이익구조, ③ 1인당으로 조정한 인건비·매출액·정부지원금, ④ 정부지원금 대비 매출액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매출수입 및 이익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사회적기업의 외부재정 의존도와 수익구조, 자립가능성을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사업수행을 위한 기초인프라와 사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사전 분석에 해당한다.

분석결과 11개 사회적기업에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는 8개 기업으로 줄어들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모두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7개이며, 이들 사회적기업은 인건비가 매출액 보다 커 아직까지는 적자구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개 기업은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되었다. 반면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에서 흑자를 본 사회적기업은 A13, A7, A3, A9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매출 및 이익규모

(단위 : 천원)

| 업종 | 사회적기업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정부지원금 | 인건비 |
|------|-------|-----------|----------|---------|---------|---------|
| 사회복지 | A1 | 666,262 | -11,373 | 23,693 | 10,000 | 498,339 |
| | A13 | 219,930 | 14,063 | 14,063 | 32,454 | 126,000 |
| 교육 | A2 | 541,074 | -309,340 | -52,347 | 9,000 | 73,350 |
| | A14 | 52,903 | -75,915 | 5,681 | 40,767 | 129,150 |
| | A15 | 396,599 | -148,982 | 29,847 | 180,400 | 162,000 |
| 청소 | A3 | 200,869 | 61,910 | 61,902 | 433,031 | 90,000 |
| | A4 | 60,315 | -6,919 | -6,893 | - | 67,200 |
| | A5 | 65,842 | -113,408 | 6,451 | 108,848 | 98,048 |
| 기타 | A6 | 20,161 | -54,773 | -6,832 | 48,211 | 39,600 |
| | A7 | 57,335 | 1,508 | 846 | - | 81,900 |
| | A8 | 2,038 | -3,133 | -3,131 | - | 92,028 |
| | A11 | 3,474 | -1,547 | -1,547 | - | 44,280 |
| | A16 | 49,516 | 43,064 | -9,720 | 23,075 | 34,560 |
| | A12 | 4,336 | -30,500 | -30,500 | 12,800 | 18,000 |
| | A9 | 4,939,045 | 91,440 | 100,471 | 14,400 | 218,338 |
| | A10 | 66,818 | -11,701 | -11,666 | 3,000 | 46,516 |

매출액의 절대규모를 보면 사회복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의 규모가 전국 평균에 비해 영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청소, 재활용, 음식료제조, 일반제조 업종의 사회적기업이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사회적기업을 보면 모든 업종에서 영업이익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당기순이익은 일반제조업을 제외하면 흑자로 전환되는 반면, 남동구는 영업이익 적자에서 당기순이익 흑자로 전환되는 사회적기업이 4개에 불과하여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평균적인 현상과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적은데서 비롯되는 결과이다.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기 전 정부나 자치단체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통해 인큐베이팅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재정지원이 사회적기업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에서 적은 지원금은 이익구조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1인당 지원금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큰 사회적기업은 A5, A15, A6 3개에 불과하다. 이와는 달리 지원금이 전무한 사회적기업은 A3, A4, A16, A7, A8, A11 등 6개에 달하고 있다.

4) 재정구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매출 및 이익구조에 이어 재정구조를 살펴봄으로써 기초인프라와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전국 평균적으로 사회적기업의 부채는 자본과 비슷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어 영리기업에 비해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남동구 소재 사회적기업은 대체로 부채가 자본 보다 큰 재정구조이다.

곽선화(2011)의 조사에 의하면 자산규모가 1억 미만인 영세 사회적기업이 전체의 30%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남동구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한 12개 사회적기업 중에서 5개가 1억원 미만으로 전국 평균에 비하여 과다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동종 사회적기업에 비하여 자본이 영세한 실정이다. 남동구와 전국 평균의 자본규모와 격차는 교육과 사회복지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청소, 재활용, 일반제조 업종의 사회적기업은 절대적인 규모는 물론이고 동종 업체의 전국 평균과의 격차도 매우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자본·부채 재정구조

(단위 : 백만원)

| 업종 | 사회적기업 | 자산 | | 부채 | | 자본 | |
|-------|-------|-----------|-------------|-----------|-------------|-----------|-------------|
| | | 남동구 ('11) | 전국 평균 ('09) | 남동구 ('11) | 전국 평균 ('09) | 남동구 ('11) | 전국 평균 ('09) |
| 사회 복지 | A1 | 219 | 706 | 173 | 170 | 46 | 535 |
| 교육 | A2 | 518 | 1,008 | 642 | 504 | -125 | 504 |
| | A14 | 102 | | 30 | | 72 | |
| | A15 | 443 | | 209 | | 234 | |
| 청소 | A3 | n.a. | 503 | n.a. | 264 | n.a. | 238 |
| | A4 | 68 | | 64 | | 3 | |
| 재활용 | A5 | 64 | 1,210 | 20 | 490 | 44 | 716 |
| 일반 제조 | A7 | 60 | 795 | 49 | 509 | 11 | 287 |
| | A8 | 25 | | 2 | | 23 | |
| 식품 제조 | A16 | n.a. | 666 | n.a. | 247 | n.a. | 424 |
| | A12 | 138 | | 5 | | 134 | |
| 기타 | A9 | 1,679 | 648 | 1,499 | 531 | 181 | 249 |
| | A6 | 9 | | 15 | | 1 | |
| | A10 | 110 | | 72 | | 50 | |

5)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먼저 성장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조 업종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등에서 전년도에 비해 안정적인 성장을 시현하였다. 남동구 사회적기업의 경우 A1과 A14 2개 업체만이 전국 평균치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반면에 A2, A12 등 2개 업체는 총자산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공히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A9 역시 총자산 증가율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매출액은 20.2%나 줄어들어 성장성은 후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남동구 사회적기업의 성장성

| 업종 | 사회적기업 | 총자산 증가율 | | 매출액 증가율 | |
|----------|-------|------------------|--------------------|------------------|--------------------|
| | | 남동구 (‘10~‘11) | 전국 평균 (‘08~‘09) | 남동구 (‘10~‘11) | 전국 평균 (‘08~‘09) |
| 사회 복지 | A1 | 26.7% | 12.5% | 29.6% | 32.1% |
| 교육 | A2 | -4.0% | 122.2% | -4.8% | 115.2% |
| | A14 | 53.2% | | 153.0% | |
| | A15 | 1.8% | | 38.4% | |
| 청소 | A3 | n.a. | 9.9% | n.a. | 119.3% |
| | A4 | n.a. | | n.a. | |
| 재활용 | A5 | 16.3% | 19.6% | 42.0% | 14.0% |
| 일반 제조 | A7 | n.a. | -0.2% | n.a. | -26.2% |
| | A8 | n.a. | | n.a. | |
| 식품 제조 | A16 | 32.6% | 27.5% | 2,795% | 38.1% |
| | A12 | -18.1% | | -96.2% | |
| 기타 | A9 | 60.6% | 50.0% | -20.2% | 12.1% |
| | A6 | n.a. | | n.a. | |
| | A10 | n.a. | | n.a. | |

주: 2010년 이후에 출범한 사회적기업은 2009년도 관련 통계가 없어 n.a.로 표시하였다.

다음으로 수익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 평균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수익성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총자본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업이익율은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고 있어 손실구조는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매출액에서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사회복지와 교육, 재활용 등을 제외하면 수익구조는 대체로 열악한 수준이다.

남동구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2, A4, A8, A12, A6 등은 3개 수익성 지표 모두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반대로 A7, A9는 3개 수익성 지표 모두에서 플러스를 기록하여 수익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회적기업은 정부지원금 수혜에 힘입어 매출액 영업이익율은 마이너스이나 순이익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경우로 매출액 확대를 위한 생산성 제고 등 자구노력이 부진할 경우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표 12> 남동구 사회적기업의 수익성

| 업종 | 사회적기업 | 총자본이익율 | | 매출액 영업이익율 | | 매출액 순이익율 | |
|-------|-------|-----------|------------|-----------|------------|-----------|------------|
| | | 남동구 ('11) | 전국평균 ('09) | 남동구 ('11) | 전국평균 ('09) | 남동구 ('11) | 전국평균 ('09) |
| 사회 복지 | A1 | 10.8% | 51.4% | -1.7% | -45.9% | 3.6% | 11.1% |
| 교육 | A2 | -10.1% | -37.4% | -57.2% | -40.1% | -9.7% | 14.6% |
| | A14 | 5.6% | | -143% | | 10.7% | |
| | A15 | 6.7% | | -37.6% | | 7.5% | |
| 청소 | A3 | n.a. | -83.5% | n.a. | -12.7% | n.a. | 1.2% |
| | A4 | -10.2% | | -11.5% | | -11.4% | |
| 재활용 | A5 | 10.0% | 20.0% | -172% | -21.8% | 9.8% | 7.6% |
| 일반 제조 | A7 | 1.4% | -108% | 2.6% | -75.9% | 1.8% | -0.2% |
| | A8 | -12.6% | | -154% | | -154% | |
| 식품 제조 | A16 | -43.1% | -85.8% | -104% | -64.4% | -104% | 1.1% |
| | A12 | -22.0% | | -703% | | -703% | |
| 기타 | A9 | 6.0% | -32.8% | 1.9% | -77.2% | 2.0% | 4.0% |
| | A6 | -78.0% | | -272% | | -33.9% | |
| | A10 | n.a. | | n.a. | | n.a. | |

마지막으로 안정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채비율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 재활용, 일반제조, 식품제조 업종의 사회적기업은 전국 평균보다 부채비율이 낮아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청소 및 기타 업종은 부채비율이 매우 높아 안정적 경영이 우려되며 특히 A2, A4, A9, A6 등의 부채비율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남동구 사회적기업의 안정성

| 업종 | 사회적기업 | 부채비율 | | 정부지원금 의존도 | |
|----------|-------|----------|---------------|-----------|---------------|
| | | 남동구('11) | 전국 평균('09) | 남동구('11) | 전국 평균('09) |
| 사회 복지 | A1 | 375% | 31.8% | 1.5% | 33.9% |
| 교육 | A2 | -516% | 100% | 1.7% | 39.6% |
| | A14 | 41.1% | | 77.1% | |
| | A15 | 89.3% | | 45.5% | |
| 청소 | A3 | 1.1% | 111% | 21.8% | 19.8% |
| | A4 | 2074% | | 0.0% | |
| 재활용 | A5 | 45.1% | 68.8% | 165.3% | 12.8% |
| 일반 제조 | A7 | 449% | 188% | 0.0% | 18.9% |
| | A8 | 8.8% | | 0.0% | |
| 식품 제조 | A16 | 7.9% | 58.3% | 46.6% | 28.8% |
| | A12 | 3.5% | | 295.2% | |
| 기타 | A9 | 829% | 213% | 0.3% | 44.9% |
| | A6 | 1459% | | 239% | |
| | A10 | 56.9% | | 2.4% | |

남동구 소재 사회적기업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혜택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전혀 없거나 소액인 사회적 기업이 많은 편이며 대체로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원금 의존도가 낮다는 것은 독립채산의 기반이 구축된 징후로 해석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사회경제적 성과분석

사회적기업의 성과는 재무지표로 본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기여한 각종 유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동구 소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포함한 총합가치를 측정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1) 사회적 수익률(SROI)

사회적 수익률 산정모형에 입각하여 공공부문 복지예산 절감액을 구하기 위하여 남동구 2011년도 세출예산을 조사한 바, 당초예산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률 대상으로 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쓰레기봉투지원, 양곡할인지원 등 각종 복지예산은 약 395억이다. 그리고 남동구 통계연보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13,64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2,898,859원으로 추정된다. 사회적기업이 기초생활수급자를 고용 시 1인당 2,898,859원의 복지예산이 절감된다는 가정하에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곱하면 기업별 복지예산 절감액이 산출된다.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취약계층 근로자는 139명이며, 이들을 고용함으로써 절감되는 복지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총 402,941천원으로 추정된다. 복지예산 절감액은 취약계층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A1의 95,662천원부터 가장 적은 A12의 5,798천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표 14> 사회적 수익률(SROI) 추계

| 업종 | 사회적기업 | 사회적 편익 | | | | 사회적 비용 정부지원금 (b) | 사회적 수익률 (a/b)*100 |
|-------|-------|-----------|-------------|--------------|---------------|------------------------|----------------------|
| | | 소계 (a) | 복지예산 절감액 | 취약계층 소득증대 | 일반근로자 소득증대 | | |
| 사회 복지 | A1 | 304,426 | 95,662 | 122,364 | 86,400 | 10,000 | 3,044.3 |
| | A13 | 40,584 | 40,584 | 부정확 | 부정확 | 32,454 | 125.1 |
| 교육 | A2 | 28,486 | 14,494 | -6,780 | 20,772 | 9,000 | 316.5 |
| | A14 | 126,147 | 31,887 | 65,604 | 28,656 | 40,767 | 309.4 |
| | A15 | 110,049 | 28,989 | 42,840 | 38,220 | 180,400 | 61.0 |
| 청소 | A3 | 60,382 | 14,494 | 11,040 | 34,848 | 0 | 138.1 |
| | A4 | 8,786 | 26,090 | -11,124 | -6,180 | 0 | - |
| 재활용 | A5 | 44,935 | 23,191 | 17,760 | 3,984 | 108,848 | 41.3 |
| 기타 | A6 | 13,851 | 11,595 | 2,256 | 부정확 | 48,211 | 28.7 |
| | A7 | 19,764 | 20,292 | -9,744 | 9,216 | 0 | - |
| | A8 | 37,286 | 26,090 | 540 | 10,656 | 0 | - |
| | A11 | 24,105 | 8,697 | 7,704 | 7,704 | 0 | - |
| | A16 | 3,110 | -1,344 | -1,344 | 5,798 | 23,075 | 13.5 |
| | A12 | 8,126 | 5,798 | 2,328 | 0 | 12,800 | 63.5 |
| | A9 | 23,191 | 66,912 | 71,640 | 161,743 | 14,400 | 1,123.2 |
| | A10 | 49,730 | 26,090 | 21,276 | 2,364 | 3,000 | 1,657.7 |
| 합 계 | | 1,041,509 | 402,941 | 331,632 | 306,936 | 536,686 | 197.7 |

다음으로 취약계층과 일반근로자를 포함, 사회적기업의 고용으로 인한 소득증대액은 2011년 기준 월평균 급여와 법정 최저임금의 차이를 기초로 산출하였다. 201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며, 이를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902,880원이 된다. 월평균 급여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상식에서 벗어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소득증대액은 연간 676,312천원으로 집계되었다. A1과 A9의 고용으로 인한 소득증대액이 가장 커 이들 2개 기업이 전체의 51.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A4, A7, A16 3개 기업은 법정 최저임금에 비치는 못하는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고용으로 인한 소득증대액은 마이너스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추계한 사회적 편익의 규모는 총 1,041,509천원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2개 사회적기업이 제외되어 있어 사회적 편익의 규모가 과소 추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6개 사회적기업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아 사회적 비용을 0으로 처리하였으며, 산정모형에서 보듯이 분모가 0일 경우 사회적 수익률 산출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구 전체의 사회적 비용은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동구 소재 사회적기업의 SROI는 52.0%로 추정된다. 최인수 외(2011)가 추정한 사회적기업의 전국 평균 SROI 48.9%에 비하면 남동구 소재 사회적기업의 SROI 52.0%는 높은 수준이며, 특히, 인천 지역의 SROI 30.3%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제외된 2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편익을 포함할 경우 SROI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사회적 수익률은 전국 평균치를 뛰어넘을 정도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 총합된 사회경제적 성과(BROI)

총합된 사회경제적 수익률(BROI)의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인수 외(2011)는 전국 평균의 BROI를 -23.4%, 인천권의 BROI를 -67.2%로 추계하였는데, 본 연구에 의하면 남동구의 BROI는 18.1%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남동구 소재 사회적기업의 순이익 120,236천원, 사회적 회수 514,824천원을 합산한 사회경제적 회수는 총 687,820천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총자산인 사회경제적 투자 3,806,639천원으로 나누면 BROI는 1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국 평균치를 크게 넘어서는 것은 정부지원금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회수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A1 145.3%, A14 89.3%, A7 34.6%, A8 137.3%, A11 506.7% 등의 BROI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A2, A15, A5, A6, A12 등은 BROI가 매우 큰 마이너스 값을 보여 아직은 사회적기업으로서 총합된 가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A2, A12는 순이익의 결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A5, A6는 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상대적 큰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5> 남동구 사회적기업의 총합된 투자수익율(BROI) 추계

| 업종 | 사회적기업 | 순이익 (a) | 사회적 회수 | | | 사회 경제적 회수 (e=a+d) | 사회경제 투자(f) | BROI (e/f)*100 |
|----------|-------|------------|---------------|--------------|--------------|----------------------------|---------------|-------------------|
| | | | 소계 (d=b-c) | 사회적 편익(b) | 사회적 비용(c) | | | |
| 사회 복지 | A1 | 23,693 | 294,426 | 304,426 | 10,000 | 318,119 | 218,909 | 145.3 |
| | A13 | 14,063 | 8,130 | 40,584 | 32,454 | 22,193 | n.a. | n.a. |
| 교육 | A2 | -52,347 | 19,486 | 28,486 | 9,000 | -32,861 | 517,773 | -6.3 |
| | A14 | 5,681 | 85,380 | 126,147 | 40,767 | 91,061 | 101,987 | 89.3 |
| | A15 | 29,847 | -70,351 | 110,049 | 180,400 | -40,504 | 442,823 | -9.1 |
| 청소 | A3 | 61,910 | 16,651 | 60,382 | 43,731 | 78,561 | 278,118 | 28.2 |
| | A4 | -6,983 | 8,786 | 8,786 | - | 1,803 | 67,559 | 2.7 |
| 재활용 | A5 | 6,451 | -63,913 | 44,935 | 108,848 | -57,462 | 64,371 | -89.3 |
| 일반 제조 | A7 | 846 | 19,764 | 19,764 | - | 20,610 | 59,569 | 34.6 |
| | A8 | -3,131 | 37,286 | 37,286 | - | 34,155 | 24,878 | 137.3 |
| 식품 제조 | A16 | -9,720 | -19,965 | 3,110 | 23,075 | 23,075 | 89,587 | 25.8 |
| | A12 | -30,500 | -4,674 | 8,126 | 12,800 | -35,174 | 138,497 | -25.4 |
| 기타 | A11 | -1,547 | 24,105 | 24,105 | - | 22,558 | 4,452 | 506.7 |
| | A6 | -6,832 | -34,360 | 13,851 | 48,211 | -41,192 | 8,758 | -470.3 |
| | A9 | 100,471 | 147,343 | 161,743 | 14,400 | 247,814 | 1,679,345 | 14.1 |
| | A10 | -11,666 | 46,730 | 49,730 | 3,000 | 35,064 | 110,013 | 31.9 |
| 합 계 | | 120,236 | 514,824 | 1,041,510 | 526,686 | 687,820 | 3,806,639 | 18.1 |

V. 결 론

본 연구는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16개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들 사회적기업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남동구 사회적기업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 A14, A5 정도 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지의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이

다. 반면에 A2, A4, A12, A6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전 영역에서 부진한 성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A1, A9, A7은 정부지원금이 적거나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성, 수익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부채비율이 높아 향후 채무상환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어려움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남동구 소재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수익률(SROI)은 52.0%로 최인수 외(2011)가 추정된 사회적기업의 전국 평균 사회적 수익률(SROI)인 48.9%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인천 지역의 SROI 30.3%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동구 소재 사회적기업의 순이익 120,236천원, 사회적 회수 514,824천원을 합산한 사회경제적 회수는 총 687,820천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총자산인 사회경제적 투자 3,806,639천원으로 나누면 총합된 사회경제적 수익률(BROI)은 1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국 평균치를 크게 넘어서는 것은 정부지원금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회수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성격이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이익창출과 사회문제해결이라는 점에서 기존 사회적 기업 성과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미시적인 관점에서 인천시 남동구 사회적 기업들의 경제적 성과(매출액 및 이익구조, 성장성과 수익성), 사회경제적 성과(SROI : Social Return on Investment), 그리고 이를 총합한 수익률(BROI : Blended ROI)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응용한 사회경제적 성과측정 모델은 취약계층 고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중심으로 측정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가 비단 고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정체성 제고를 통한 내발적 발전역량 제고 등 무형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객관적이고 폭넓은 성과측정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확장성은 향후 보완이 필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선화. (2010).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석」. 고용노동부.
- 김순양. (2008).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의 개발 및 적용”. 『지방정부연구』. 12(1). pp. 31~59.
- 삼성경제연구소. (2009).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 이규용·이해춘·이인재·박성재·이지은. (2005). 「일자리 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등 성과분석체계 구축」. 기획예산처
- 이승규·라준영. (2010).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 : 사회투자수익율(SROI)”. 『벤처경영연구』. 13(3). pp. 42~58.
- 이용탁. (2010). “BSC를 이용한 사회적기업의 성과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6권. pp. 267~287.
- 장성희·반성식. (2010). “사회적 기업의 기업가 지향성과 시장 지향성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3(6). pp. 3479~3496.
- 전대욱·최인수·박승규·김도형·김선기. (2011).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전략”. 고용노동부·한국 지방행정연구원.
- 장영란·홍정화·차진화. (2012). “사회적기업의 성과 및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30(2). pp.175~207.
- 정영호·노태명·고숙자. (2008). “사회적 일자리(기업)의 가치평가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25(1), pp. 72~99.
- 최조순·강병준. (2012). “조직 유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 Emerson, J., J. Wachowicz., and S. Chun. (2000). “Social Return on Investment : Exploring Aspects of Value Creation in the Nonprofit Sector”, in REDP(2000), *Social Purpose Enterprise and Venture Philanthropy in the New Millenuium : Investor Perspectives*, 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 Vol.2, pp.132~173.
- Garengo, P. S. Biazzo. and U. Bititci. (2005).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in SMEs : A Review for a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7(1), pp. 25~47.

